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59

제출년월일: 2023. 5.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규격화된 표창 서식을 대상 및 행사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조항 개정(안 제10조제1항)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나. 표창사실 확인 조항 개정(안 제18조제1~3항)

-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 자격·방법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
- [별지 제7~8호서식] 신설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3. 4. 27. ~ 5. 10.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2023.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6호에 따른 표창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표창방법 및 시상금 등) ①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단서 신설>	제18조(표창사실 확인) ① ----------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12.26>~~

~~[액자메달형 표창장]~~

~~※ 표창장에 적용하며, 내용 및 기타 표기사항은 수정하여 사용~~

~~[액자]~~
~~○ 재질 : 나무+유리~~
~~○ 크기 : 350mm(가로)×260mm(세로)×15mm(두께) / 30mm(액자테두리두께)~~
~~○ 하단인쇄 : 금색 실크스크린~~
~~○ 색상 : 브라운~~
~~[내지]~~
~~○ 크기 : 297mm × 210mm~~
~~○ 재작 : 옵셋인쇄~~
~~○ 색상 : 바탕 흰색, 테두리 진한노랑~~

~~[배자관련]~~
~~1. 띠~~
~~○ 크기 : 36mm × 50mm /36mm × 10mm~~
~~○ 재질 : 천~~
~~○ 색상 : 군청, 흰색, 빨강 3색~~
~~2. 배자~~
~~○ 크기 : 70mm(최장지름)~~
~~○ 재질 : 금속~~
~~○ 색상 : 구워장 MAPO Sky Blue, 빨강, 녹색, 흰색, 금색~~

<신 설>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

수상자	성 명		생년월일	
	수여 당시 소 속		수여 당시 직 급	
수여내역	표창종류 (표창장, 감장, 감사장)		수 여 기록번호	
	수 여 일			
	공적요지			
용 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상자와의 관 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제 호

수상자	성 명		생년월일	
	수여 당시 소 속		수여 당시 직 급	
수여내역	표창종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수 여 기록번호	
	수 여 일			
	공적요지			
용 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이경미 (☎8215)